# UN,IAEA,CTBTO에서의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

신동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(KINAC) 정책위원

# 1. 유엔안보리(UN Security Council)



### <u>가. 하노이 북미정상회담(</u>2019.2)

#### -북한의 안보리결의 해제요구

△ 북한의 '일부 해제' 주장 제재 5건, 사실상 중요부분 해제

• 2016년 2270호 :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,광물수출 금지

2321호 : 석탄 수출량 제한, 각종 광물 수출 금지

• 2017년 2371호 : 석탄 수출 전면 금지, 해산물 수출금지

2375호 : 섬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

2397호: 대북원유 400만(정유 50만)배럴 상한선 지정,

북한 해외노동자 2019년 말까지 송환

• 북한의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270호부터 ICBM 발사후 채택된 2397호까지 5개의 결의는 실질적 압박을 강화

#### △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:

• 1718,1874,2087,2094,2270,2321,2356,2371,2375,2397호(총10개) <u>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Sanctions\_against\_North\_Korea</u>



### <u>나. JCPOA에 따른 대이란 안보리제재 해제</u> (안보리결의 2231호, 2015.7.20)

- 결의 2231호는 '포괄적 공동행동계획(JCPOA)'를 인준하고, 이에 따라 이란이 핵활동을 제한할 때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
- 이란의 JCPOA 이행에 대한 2015년 12월 IAEA의 공식 확인에 따라 제재 해제 가능
- 2016.1.6 이란 경제·금융 제재 해제되는 '이행일(Implementation Day) '에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
  - 2006년부터 부과되었던 에너지,무역,투자,금융관련 제재 해제
- 미국도 2차 제재 (Secondary sanctions)를 풀고, 원유·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를 해제, 자동차·보험 관련 산업도 개방

#### (기존의 대이란 안보리 제재결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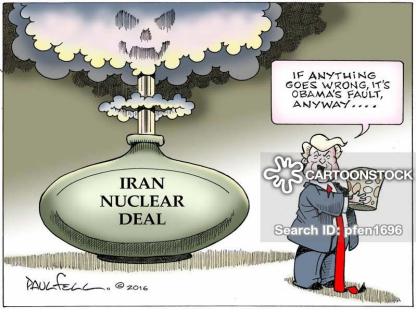
• <u>안보리결의 1696,1737,1747,1803,1835,1929,1984,2049</u>

## <u>다. 미국의 이란 핵합의(JCPOA) 파기</u>

- 2019.5.8 Trump 미국 대통령은 "현재 핵협정(JCPOA)으로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"며 협정 탈퇴 발표
- Trump 대통령은 "2015년의 핵협정은 이란의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"며 미국의 탈퇴 이유 설명
- -"이란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며, 미국은 이란에 고강도 제재를 재개할 것"이라고 함.

"At the heart of the Iran deal was a giant fiction: that a murderous regime desired only a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. Today, we have definitive proof that this <u>Iranian promise was a lie.</u>"







### <u>라.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해제 가능성</u>

- 2015년 P5+1 국가들과 이란간 합의(JCPOA)에 따른 제재 해제와 같이 미.북간 합의로 실질적 비핵화 조치 진전시 북한에 대한 관련 제재 해제 가능
- 대북제재는 10년 이상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포괄적용 되고 있 어 단계적 해제 예상
  - -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(1718 Sanction Committee)에서 논의 시작
- 안보리 결의는 미국 포함 15개 이사국들이 합의로 채택된 만큼 해제 결의 채택에 전 이사국 동의가 필수적
- 중.러는 대북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반면, 영,불,독은 북한 의 비핵화(CVID)가 이루어지기전 제재해제에 부정적
  - -10.2 북한의 SLBM 시험에 대해 유럽 이사국(6개국) 공동성명
  - \* 미의회에 의한 양자 대북제재 해제도 복잡한 승인절차 필요

# 2. 국제원자력기구(IAE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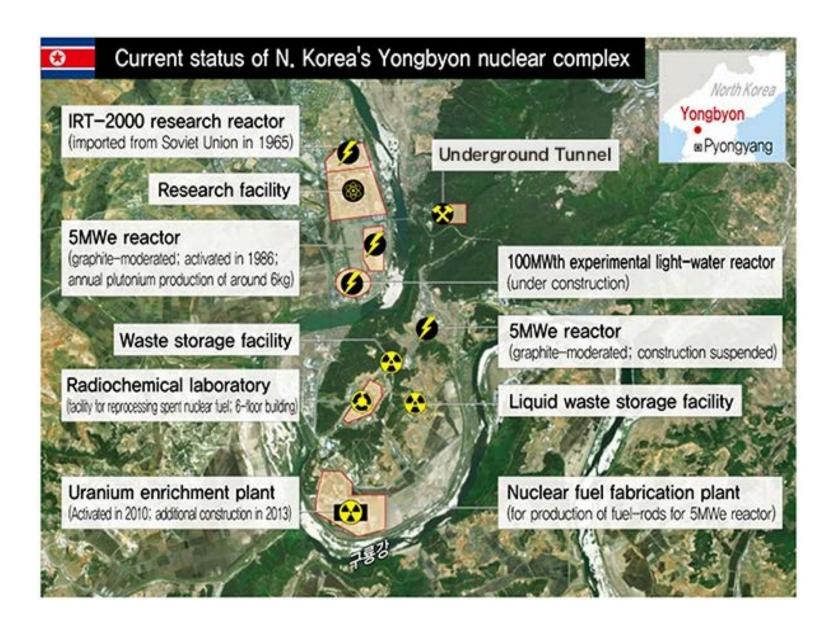


## <u>가. 북한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</u>

- 1974.5 북한의 IAEA 가입, 1977 부분안전조치협정 체결
- 1985.12 북한의 NPT 가입
- 1992.4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(INFCIR/403) 발효
- 1992.5-1993.2간 6차례 임시사찰(ad hoc inspection)
- 1993.4 IAEA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(non-compliance)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
- 1993.4 북한의 NPT 탈퇴 선언, 1994.6 IAEA 탈퇴
- 1994.10 미.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IAEA 핵동결 감시 시작
- 2002.10 북한의 우라늄 농축문제 발생, 12월부터 사찰중단
- 2005.9 6자회담 (9.19)공동성명후 2007.7부터 사찰 재개
- 2009.4 검증합의서 합의 실패로 IAEA 사찰단 철수
  - 이후 IAEA는 위성영상 등을 통해 영변 핵시설 모니터링 지속
- <a href="https://www.iaea.org/newscenter/focus/dprk/chronology-of-key-events">https://www.iaea.org/newscenter/focus/dprk/chronology-of-key-events</a>







## 나. <u>IAEA의 대북한 검증활동 준비동황</u>

#### (IAEA 총회 북한결의)

- 1993년 이후 북한의 NPT 복귀와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 지속채택
  - 2019.9.20 제63회 IAEA 총회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
- 북한이 IAEA 안전조치(Safeguards)에 조속히 복귀, 핵무기와 탄도미 사일 프로그램을 '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'(CVID)으로 폐기해야 한다"고 강조
- IAEA는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북한 핵 시설 사찰재개 준비 적극 지원 (DPRK Team 운영)
- 2017.9 IAEA의 북한 사찰 요청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설 치(안전조치실 내)
- 대북한 모니터링 능력 제고, 사찰복귀 활동계획(Action Plan) 수립: 소 요재원, 인력투입계획, 필요장비 및 절차, 시설별 안전조치 필요사항

## <u>다. IAEA의 검증활동 재개시 예상 절차</u>

- IAEA의 대북사찰은 1994-2002년, 2007-2009년간 이루어 졌으나, 포 괄적 안전조치 활동은 제한적
- 미-북간 비핵화 협상 타결 후 IAEA 검증활동이 재개된다면 아래 절차 로 진행 예상
  - -북한은 NPT 및 IAEA에서 탈퇴한 상황, IAEA사찰 재개를 위해 북한의 동의가 전제
  - -그 경우 IAEA는 사무국 고위인사와 전문가를 파견, 사찰관련 상세내용(modality) 합의, 이에 대한 IAEA 이사회 승인 필요
  - -북한이 제출한 신고서(initial declaration) 내용에 대해 IAEA 사찰 시작 예상
- 1992.4. 체결 핵안전조치협정(<u>INFCIRC/403</u>)에 대해 북한은 NPT와 IAEA 탈퇴로 준수의무가 없다는 반응
  - -IAEA사찰 공식 재개시 법적 근거인 안전조치협정도 협상 과제 예상

# 3.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(CTBTO)



https://www.ctbto.org/the-treaty/developments-after-1996/2017-sept-dprk/



반충변 기자 / 20170903 트위터 @yorhsp. graphics 페이스북 tuney.kr/LeYN1

## <u>가.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</u> (2018.5)



#### (David Albright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(ISIS) 소장)

- 갱도입구와 안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사진들로 완전히 폐기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평가
- 핵 실험장이 완전 폐기된 게 아니라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갱도(남쪽,서쪽)는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지적

#### (박한기 합참의장)

 10.8 국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"1·2번 갱도는 (살리기) 어렵지만, 3·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"이 라고 답변. (복구 기간은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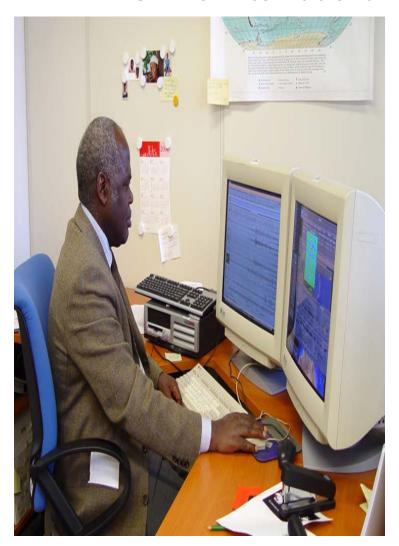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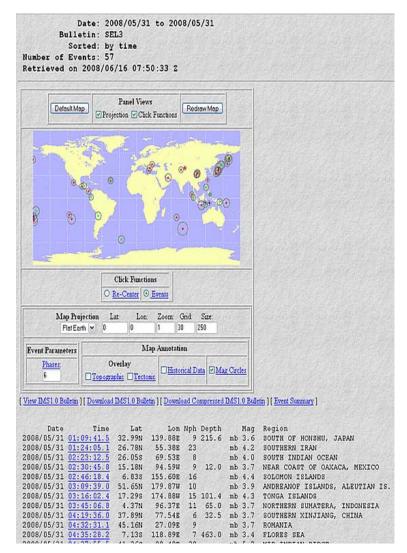
## <u>나. CTBTO의 역할 및 한계</u>

### (CTBTO의 역할)

- 북한의 핵실험시 마다 CTBTO의 감시체계에 의해 핵실험의 규모와 성격 파악
- 지진파(seismological), 핵종(radionuclide), 수중파(hydroacoustic),
  초음파(infrasound)측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
-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의 폭발상황을 CTBTO 국제데이터센터 (International Data Center)에서 취합
- 실제로 핵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BT에 따라 현장 사찰(on-site inspection) 가능
-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국제 검증을 받는다면 CTBTO 사찰단의 방문이 적절
  - -IAEA는 핵 실험이 아닌 핵분열 물질과 관련 시설 검증 역할

#### **CTBTO International Data Center**





### (CTBTO's On-site inspection)













### (CTBTO 검증 활동의 한계)

- 1996년 성안되어 현재까지 184개국이 서명 (164개국 비준), 원자력 발전능력 보유(Annex II) 44개국이 모두 비준 해야 발효
   -Annex II 국가 중 8개국(미국,중국,북한,인도,파키스탄,이란,이집트,이스라엘)이 미비준 또는 미서명, 아직 효력 미발생
- 미 서명국인 북한이 CTBTO의 방문 수용여부와 풍계리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조사결과에 대해 논란 가능성
- CTBTO 사찰관들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CTBTO 준비회의(PrepCom) 의 임무 승인 필요
  - -비준국가 중 러시아, 미 비준국가인 중국 등이 조약 미발효 상태에 서 CTBTO의 사찰활동에 부정적 예상